#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70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이주환·김예지·김정재

서일준 • 윤창현 • 김용판

권명호 · 김희곤 · 金炳旭

지성호 · 김기현 · 정동만

강민국 · 최승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 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금의 송금·이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다목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 사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호 및 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다.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제2조의2의 제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2조의3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2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2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기통 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각각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사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	제1조(목적)전기통신사
<u>융사기</u> 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	<u>7]</u>
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	
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	<u>전기통신사기</u>
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	
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u>전기통신사기</u>
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u>전기통신사기</u>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 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 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2의2. (생략)

-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입은 자를 말한다.
- 4. (생략)
-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 7. (생략)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 전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
네받는 행위
2의2. (현행과 같음)
3 <u>전기통신사기</u>
,
4. (현행과 같음)
5 <u>전기통신사기</u>
 6.·7. (현행과 같음)
세2조의2( <u>전기통신사기</u> 에 대한 대응 등) ①
ll2조의2( <u>전기통신사기</u> 에 대한
세2조의2( <u>전기통신사기</u> 에 대한 대응 등) ①
세2조의2( <u>전기통신사기</u> 에 대한 대응 등) ①

-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
   1. 전기통신사기

   보의 수집 · 전파
   -----
- 2. <u>전기통신금융사기</u>에 대한 예 보·경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u>전기통신금융사기</u> 대응조 치
-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③ (생 략)
-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u>전기</u> <u>통신금융사기</u>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저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

1. <u>선거홍신사기</u>
2. 전기통신사기
3
<u>전기통신사기</u>
②전기통신사기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세2조의3(국제협력) <u>전기</u>
<u>통신사기</u>
 ll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제2소의 4(日 등 의 기 의 에 당시 책임 등) ① <u>전기</u>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 ② (생략)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 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 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 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 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

통신사기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역
시조치) ①
전기통신사기

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 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 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 용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 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 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 략)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u>전기통신사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u>전기통신사기</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 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 다는 취지
- 2. ~ 8. (생략)
- ③ (생략)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저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2)
1. <u>전기통신사기</u>
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1. (현행과 같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③ (생 략)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저 (생 략)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 2. (생략)

전기통신사기	
②・③ (현행과 같음)	
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현행과 같음)	
②	
2	
(2)	
②	-
(2)	-
	-

#### ③ (생략)

-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승계인
  - 2. 해당 <u>전기통신금융사기</u>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4. (생략)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지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 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

	3	(현행	과 같음	음)		
세	113	조(피 ਰ	해환급금	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자) -			
	1.		<u>전기통</u>	<u>신사기</u> -		
	_					
	_					
	2.			<u>신사기</u> -		
	<u>-</u>			 xl xl ⁊l		-
	٥. 		· <u>신기궁</u>	<u>신사기</u> - 		
					_	
	4		과 같음			
				´ 성구권고	<del>나</del> 의 관	<u></u> 년계)
				- <u>전기통</u>	신사	<u> 7]</u>
				·		
법	륟	제17	'296호	전기통	신금-	융사
7]	IJ	]해 병	방지 및	피해	금 환	급에
란	한	특별병	법 일부	개정법	륟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
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
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
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
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
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
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 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 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1
전기통신사
<u>7]</u>
2

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 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 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 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 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 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 ④ (생 략)
-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 용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
<u>사기</u>
3 <u>전기통신사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3조의3(전기통신사기에 이용
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u>전기통신사기</u>
<u>(47) 6 (47) 7</u>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 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 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 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사기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